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전자관보 제20969호(2025.04.08)와 관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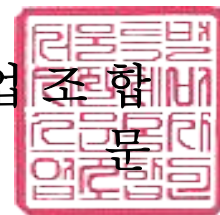
2. 개별 학교 등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은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“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행일 : 공포 후 시행 (‘25.4.8)

※ 불 임 : 전자관보 1부. [끝]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이사장 오 성 문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5- 79호 (2025.04.10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